

◆ 학교 규칙 ◆



홀트 학교

홀트학교 규칙

[2007. 5. 1 전부개정]

[2011. 3.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부속기관운영지침 중, 홀트학교 규정 제45조【세칙제정】와 부칙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홀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학제) 본교는 홀트학교라 칭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를 둔다.

제3조 (주소)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4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유치원 과정 : 1년
2. 초등학교 과정 : 6년
3. 중학교 과정 : 3년
4. 고등학교 과정 : 3년
5. 전공과 과정 : 2년

제5조 (학년·학기) ①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등)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정공휴일 및 추석, 설날연휴
2. 여름·겨울방학 및 학년말 휴가, 개교기념일, 토요일휴업일, 학교장재량휴업일,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3. 그 밖의 휴업일은 제1·2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휴업 일에는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편성) ①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각 과정별 인가학급 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유치원 과정 : 1학급
2. 초등학교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12학급
3. 중학교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6학급
4. 고등학교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6학급
5. 전공과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4학급

제8조 (학생정원) 본교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특수교육진흥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달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0조 (개별화교육) ①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별화교육계획은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 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④개별화교육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은 180일 이상 확보한다.

2.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2조 (수업운영방법) 수업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2.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인 현장 체험학습은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간 7일 이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학교주관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교류체험학습은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4. 고등학교 3학년은 수업일수 3분의2 수료 후 남은 수업일수에 대해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현장실습을, 전공과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현장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①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전학, 유예 등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의 각 과정별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유치원 과정 :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정신지체아)
2. 초등학교 과정 : 만6세부터 만12세까지의 장애학생(정신지체아)
3. 중학교 과정 :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신지체아),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고등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신지체아),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전공과 과정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신지체아),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6. 학령기가 지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

가. 만6세가 초과한 아동에 대하여 동장에게 취학통지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해당 학교장은 연령과 학력을 감안하여 적정 학년에 취학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제29조 2항)

나. 학령기가 지난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격이 없는 자가 정신지체학교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16조 (취학 방법) ① 본교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취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 취학은 고등학교 과정은 경기도제2특수교육운영위원회, 중학교 이하 과정은 경기도고양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배치를 받은 자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전학) ① 본교 재학생이 주소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입학 했을 때에는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별화교육계획결과물 등의 자료를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송부 요청한다.

제18조 (장기결석 학생처리) 장기결석 학생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장기결석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5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의무교육 면제 또는 유예승인을 받지 않는 한 유급시키지 않는다.
3.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일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되, 당해 학년도에 다시 출석할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당해 학년도를 경과할 경우에는 유급 조치한다.
4.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적사항은 해당국의 근거서류 또는 입국증명서로 대신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부모의 확인서로 대신한다.
5. 개인 및 가정 사정으로 출석일수 부족이 예상되는 학생은 방문교육, 통신교육, 체험학습, 순회교육, 학습과제물 등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유예 및 휴학처리) 유예 또는 전공과 학생의 휴학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생이 유예 또는 전공과 학생이 휴학하려고 하는 때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유예 또는 휴학을 청원하여야 한다.
2.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3. 유예 또는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0조 (재취학 및 재입학) 재취학 및 재입학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유예 결정을 받은 자 또는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재취학하게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재취학할 수 있으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또는 학년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생의 연령, 신체조건, 과목이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대신한다.
3. 전공과를 휴학한 자의 재입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제21조 (수료 및 졸업) ①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②유치원 과정의 수료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의 졸업을 인정함에 는 수업일수와 평상시 생활발달상황을 평가하여 정한다.

제22조 (자퇴) 전공과를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출원 하여야 한다.

제6장 수업료 등

제23조 (수업료 · 입학금 및 교과용도서대) 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제24조 (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와 같이 교육과정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다. 단, 현장체험학습 시 소요되는 교사경비는 학교에서 출장비 또는 실비 처리한다.

제7장 학생포상 및 체벌금지

제25조 (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상한다.

③담임교사는 학급학생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담임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담임이 직접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폭력을 가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목적 및 지원

제27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학생회를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함으로써 애교심을 갖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와 자치활동의 경험을 갖게 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데 있다.

제28조 (지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29조 (학칙 제·개정) ① 학칙은 법인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③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교무업무시스템 관리) 효율적인 교무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기숙사 운영) ①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② 기숙사 복무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기타 세칙)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법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제3조(위치), 제4조 5항(순회학급), 제5조(학생정원), 제7조(학년학기), 제8조(휴업일), 제10조(수업일수)의 사항을 개정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제2조(명칭 및 학제), 제3조(주소), 제4조(수업연한), 제7조(학급편성 및 학급 수), 제10조(개별화교육),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수업운영방법), 제15조(입학자격), 제16조(취학 방법), 제17조(전학), 제19조(유예 및 휴학처리), 제20조(재취학 및 재입학), 제21조(수료 및 졸업), 제22조(자퇴), 제29조(학칙 제·개정)의 사항을 개정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